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82호
2021. 10. 27.(수)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067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068호) .. 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069호) 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070호) 22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

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함(안 제4조).

다. 실·국 분장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라.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비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11.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 1) 서면, 직접방문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덕구청 기획홍보실
- 2) 전 화 : 042-608-6043
- 3) F A X : 042-608-3811
- 4) E-mail : song80@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4조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7조 중 “실·단·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5층 (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법1동, 법2동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참조란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동주택팀장”을 “주택복지팀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총무과장”을 “운영지
원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동주택팀장”을 “주택복지팀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국장의 분장사무 (제7조 관련)

※엑셀파일 별첨(p.6~p.9)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자치분권과, <u>세무과</u>,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p> <p>제7조(분장사무) 구 본청 <u>실·단·국장</u>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p> <p>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4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p> <p>②·③ (생략)</p> <p>제11조(설치) ① <u>법 제114조</u>에 따</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4조(행정지원국) ----- <u>세정과</u>, <u>세원관리과</u>-----</p> <p>-----</p> <p>제7조(분장사무) ----- <u>실·국장</u></p> <p>-----</p> <p>제8조(설치) ①----- <u>제126조</u>-----</p> <p>-----</p> <p>-----</p> <p>-----</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설치) ① <u>법 제127조</u>-----</p>

라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설치) ① -----
제7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안 제6조).

나. 분과에 따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의 분장사무를 정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 1) 서면, 직접방문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덕구청 기획홍보실

2) 전 화 : 042-608-6043

3) F A X : 042-608-3811

4) E-mail : song80@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운영지원과장·자치분권과장·세무과장·민원봉사과장”을 “운영지원과장·자치분권과장·세정과장·세원관리과장·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정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 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u>운영지원과장·자치분 권과장·세무과장·민원봉사과 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 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 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지원국) ----- ----- ----- <u>운영지원과장·자치분 권과장·세정과장·세원관리과 장·민원봉사과장</u> ----- ----- -----

[별표 1] 구 본청 실·과·단장의 분장사무(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6 ~ p.23)

[별표] 사무 전결 기준(제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24 ~ p.127)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62명”에서 “777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75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및 안 별표 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11.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 1) 서면, 직접방문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덕구청 기획홍보실

2) 전 화 : 042-608-6043

3) F A X : 042-608-3811

4) E-mail : song80@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2명”을 “77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5명”을 “75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77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774					
	3급	1	1				
	4급	5	4		1		
	5급	47	27	3	4	1	12
	6급 이하	721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62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745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7명</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 ----- ----- ----- ----- ----- ----- ----- ----- ----- -----</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 ----- <u>777명</u> ----- ----- ----- ----- ----- -----</p> <p>1. ----- <u>757명</u></p> <p>2. ----- <u>20명</u></p>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 효율적 조직운영

나. 관련 조문: 안 제2조 및 안 별표 3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 최근 3년 평균 인상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총 비용	177,002	180,188	183,432	186,733	190,094	917,449
세 입	-	-	-	-	-	-
세 출	177,002	180,188	183,432	186,733	190,094	917,449
인 건 비	177,002	180,188	183,432	186,733	190,094	917,449

5.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국·시비	177,002	180,188	183,432	186,733	190,094	917,449
구비						
지방세수입 등	-	-	-	-	-	-
합 계	177,002	180,188	183,432	186,733	190,094	917,449

6. 비용추계 포함된 내용

- 인건비(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물건비(직급보조비)
- 이전경비(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7. 작성자 : 기획홍보실 기획팀(☎608-6043)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조례에서 현안수요 발생으로 일부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원의 총수를 “762명”에서 “777명”으로 15명을 증원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11.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 1) 서면, 직접방문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덕구청 기획홍보실
- 2) 전 화 : 042-608-6043
- 3) F A X : 042-608-3811
- 4) E-mail : song80@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4 ~ p.8)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